

FTA 100% 활용하기

해외임가공과 원산지 검증

정운상 | 법무법인(유) 율촌 관세사

해외임가공과 원산지 검증



정운상

경희대학교 대학원 경영학 박사
現 법무법인 율촌 관세사
前 재정경제부 국세심판원
前 부산, 서울, 김포, 인천세관

1. FTA와 원산지 검증

국가간 상품 및 서비스 교역에 대한 무역장벽을 철폐하면서 교역을 증진 시키기 위한 노력으로 우리나라는 세계 여러 나라와 FTA를 체결하였다. 이에 따른 관세의 자유화로 인하여 교역증진은 물론 수출입 기업들의 생산성 제고 및 수출증가로 국민경제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 상품의 경우 FTA를 체결한 당사국의 원산지로 인정되는 상품에 한하여 FTA에 의한 협정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데 당해 상품의 원산지가 어떠한 기준에 따라 어떻게 확인되는지 여부가 FTA 적용의 핵심이라 할 수 있다. FTA 협정세율을 적용함에 있어서 원산지의 적정여부를 검토하는데 이를 “원산지검증”이라고 한다. 원산지검증은 절차적인 분야와 실제적인

2. 문제의 제기

분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절차적 분야의 검증이란 수입자가 제출한 원산지증명서가 협정에서 정한 방식에 따라 발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고, 실체적 분야의 검증이란 협정에서 정한 방식에 따라 적법하게 원산지가 결정되었는지 여부를 살펴보는 것을 말한다. 통상적으로 광물, 식물 등과 같이 한 당사국에서 완전하게 생산되는 상품의 경우에는 원산지의 확인에 큰 어려움이 없지만(완전생산기준) 국제적 분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실제의 거래에서는 이와 같은 완전생산기준에 따라 원산지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각 FTA 협정 별로 세번변경기준¹⁾, 부가가치기준²⁾, 가공 공정기준³⁾ 누적기준⁴⁾ 등 다양한 원산지결정기준을 두고 있다.

일반적인 상품의 수출입거래에 있어서는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절차적, 실체적 원산지 검증에 의하여 원산지를 결정하여 FTA를 적용하면 문제가 없을 것이나, 해외임가공거래 또는 보세공장 또는 보세건설장에서 생산된 물품과 관련한 원산지결정은 관세법과 FTA 협정이 동시에 적용되고 일부는 결합되어 있어서 원산지결정에 어려움이 많다. 해외임가공 물품의 FTA적용은 일종의 역외 가공이라고 볼 수 있겠으나, 일부 협정은 역외가공을 인정(예 : 한-유럽자유무역연합 FTA)하고 일부 협정은 불인정(예 : 한-미 FTA⁵⁾)하고 있으며, 관세법상의 해외임가공제도, 품목분류 문제 등이 결합되어 있어 원산지를 어떻게 결정하여야 하는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보세구역(건설장)에 대한 원산지결정도 유사하게 복잡한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여기서는 우선 해외임가공제도에 대하여 이를 검토 하고자 한다.

- 1) 협정 당사국 외에서 생산된 재료가 협정 당사국에서 가공되면서 품목분류가 일정한 수준 이상으로 변경되는 경우 원산지물품으로 인정하는 기준
- 2) 협정 당사국에서의 가공과정에서 일정한 수준 이상의 부가가치가 더해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원산지물품으로 인정하는 기준
- 3) 협정 당사국에서 특정한 공정이 수행되거나 특정한 부품 등이 사용되는 경우 원산지물품으로 인정하는 기준
- 4) FTA 체결 국가 간 원부자재의 교역을 활성화 하기 위한 것으로서,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서 제품을 생산하는 과정에 체약 상대국 원산지재료를 사용할 경우 그 재료를 우리나라 원산지물품으로 간주하는 것
- 5) 아이슬란드, 리히테슈타인, 노르웨이, 스위스 등 유럽 4개국이 소속된 지역경제 통합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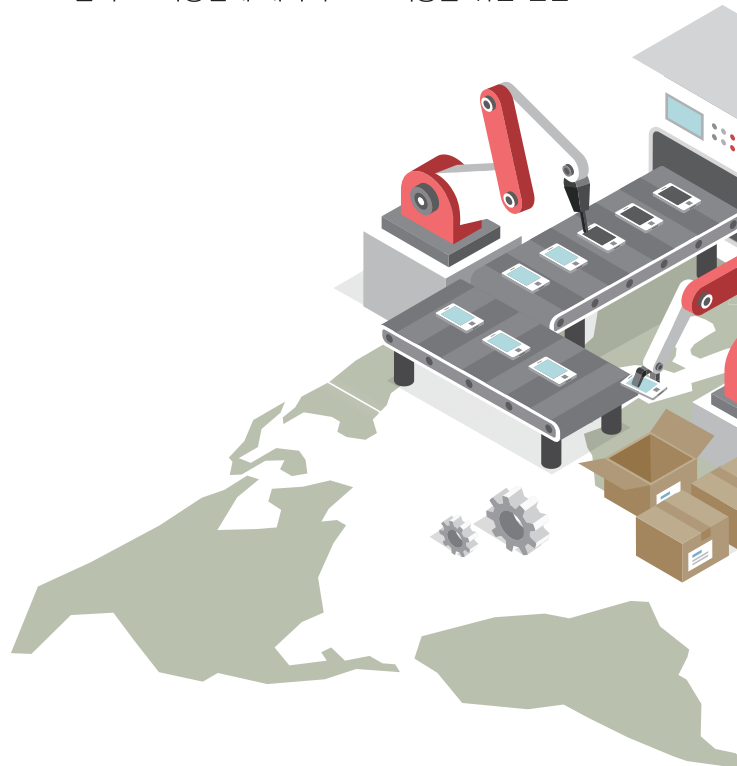
3. 해외임가공물품 원산지

가. ‘해외임가공거래’란, 국내의 원·부자재를 수출하여 해외에서 제조·가공한 완제품을 수입하거나 다른 나라로 수출하는 거래형태를 말한다. 이와 관련하여 대외무역법에서는 해외임가공과 유사한 개념으로서 위탁가공무역을 규정하고 있는데, “가공임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외국에서 가공(제조, 조립, 재생, 개조 포함)할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래 상대방에게 수출하거나 외국에서 조달하여 이를 가공한 후 가공물품을 수입하거나 외국으로 인도하는 수출입을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관세법에서는 해외임가공물품을 감면대상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으나, 해외임가공거래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정의하고 있는 규정은 없다. 대외무역법 상 위탁가공무역은 원료를 외국에서 조달하는 것도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원재료를 국내에서 수출할 것을 전제로 하는 관세법 상 해외임가공거래보다는 다소 넓은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나. 관세가 감면되는 해외임가공물품은 ‘원재료 또는 부분품을 수출하여 관세율표 제85류 및 제9006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제조된 것’과 ‘가공 또는 수리하기 위하여 수출된 물품으로서 가공 수리 후 수입된 물품의 품목분류표 상 10단위의 품목번호가 일치하는 물품’을 말한다. 다만, 하자보수

기간 중 매도인의 부담으로 가공 또는 수리하는 것이 아닌 한, 가공임(부가가치 상승분)은 감면에서 제외하여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다.

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가공임(부가가치 상승분)으로서, 가공임은 해외임가공감면이 되지 않으므로 이를 FTA를 적용하여 협정세율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검토하고자 한다. 이러한 규정하에서 해외임가공을 통해 재수입하는 물품과 그 가공임에 대하여 FTA 적용을 위한 원산



지를 결정하는 경우, 제85류 또는 제9006호에 해당하는 수입물품에 대해서는 2가지의 경우를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즉, FTA 협정에서 세번 변경기준 또는 부가가치기준 등 협정의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하는 경우가 있을 것이고 다른 경우는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것이다.

- (1)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는 경우는 제85류 내에서도 4단위, 6단위로 세번 변경이 가능하여 세번변경기준을 충족한다면 당사국의 원산지 증명을 발급받아 가공임을 포함하여 FTA적용이 가능한 경우가 있을 것이다.⁶⁾ 한편, 제85류 중에서도 해외임가공으로 수출하는 물품과

임가공되어 수입하는 물품의 세번이 동일한 경우에는 해외임가공물품(재반입물품+가공임)이 원산지물품으로 인정 될 수 없고 체약당사국에서 원산지증명을 발급받지 못하여 FTA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가 있을 것이다.

- (2) 제85류와 제9006호를 제외한 물품의 경우 품목 번호 10단위가 일치하는 해외임가공의 경우에는 위의 두번째 사례와 같이 당사국의 원산지 증명을 받지 못하므로 FTA 협정세율 적용은 어려운 경우가 있을 것이다. 이런 경우 관세법에 의한 해외임가공감면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원칙적으로 가공임은 별도 과세대상이다.

- (3) 그렇다면, 해외임가공 수입물품 중 우리나라에서 수출한 물품은 관세법에 따라 해외임가공 감면을 받고, 그 가공임에 대하여는 체약상대국의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아 FTA를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의문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그러한 방법이 어렵다면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여기에 대하여는 다음의 사례연구를 통하여 연구하여 보기로 하겠다.



6) 가공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기준 또는 가공공정기준으로는 원산지 기준을 충족할 수 없기에 여기서 언급은 생략함. 수출물품의 세번과 관련 없이 임가공 후 수입되는 물품이 85류 또는 9006호에 해당하면 해외임가공 감면에 해당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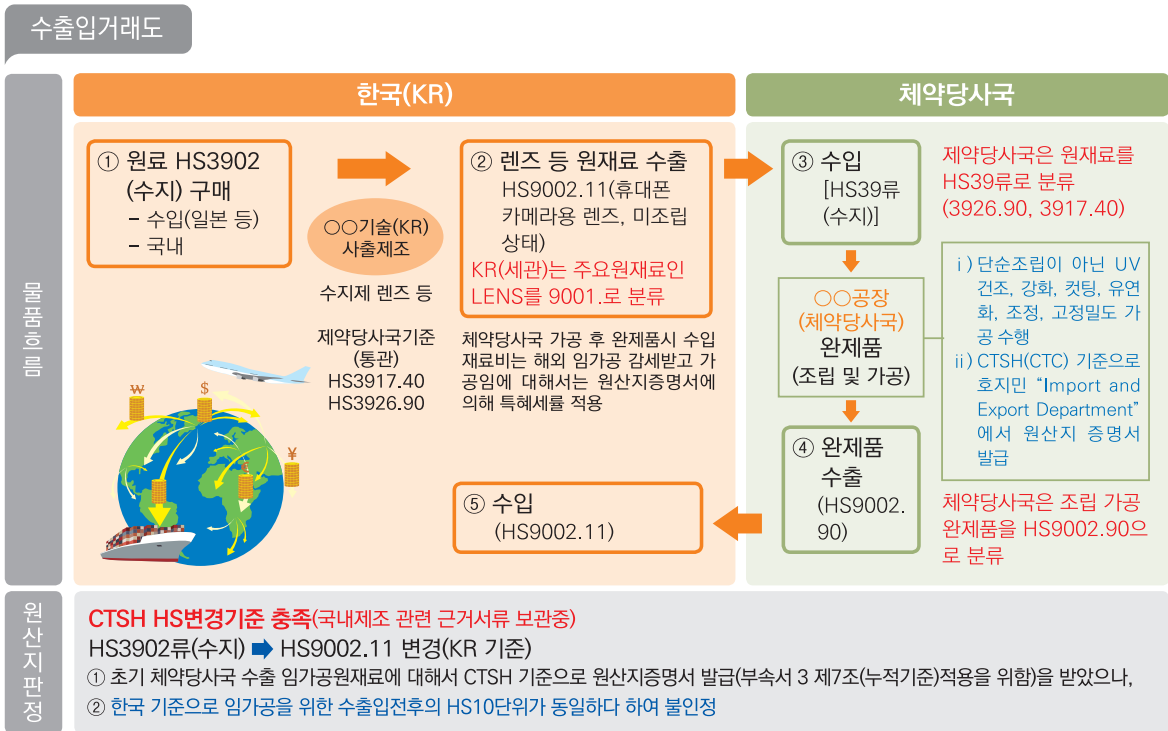
4. 사례연구⁷⁾

가. 사실관계 및 쟁점

청구법인은 휴대폰용 카메라렌즈(쟁점물품)를 생산하는 업체로서 해외자회사에 휴대폰용 카메라 렌즈 제조에 사용되는 부품(쟁점원재료)을 수출하여 해외임 가공하여 수입하면서 쟁점원재료에 대하여는 관세법에 의한 해외임가공 감면을 받고 그 가공임에

대하여는 당사국의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아 FTA 협정세율을 적용 받았다.

처분청은 원산지 검증을 하면서 쟁점원재료와 쟁점 물품의 세번이 동일하여 6단위 세번변경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FTA 적용을 배제하였다.⁸⁾



7) 동사례는 세번 제85류 및 제9006호에서 세번변경이 일어나지 않는 경우와 10단위 세번이 변경되지 않고 반입하는 사례를 대표하는 것으로 보고 논지를 정리한 것이다.

8) 조심 2016관172 (2017.5.22) 결정 외

나. 이 사건에서 제기되는 문제점

- (1) 해외임가공하여 재수입되는 물품 중 쟁점 원재료에 대하여는 관세법에 의한 해외임가공 감면을 적용하고 그 임가공임에는 FTA를 적용할 수 있는지 의문이 있을 수 있고
- (2)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관세법에 의한 해외 임가공감면을 받을 경우 그 가공임에 대한 과세 문제가 있다.
- (3) 그 밖에 다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합리적 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모색하여 보기로 한다.



다. 해결의 모색

- (1) 이 사건에서 1개의 물품을 재료의 가격과 가공임으로 구분하여 재료 부분에는 관세법에 의한 해외임가공감면(쟁점원재료), 나머지 가격(임가공임)에는 FTA 협정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불가한 것으로 생각된다. 해외임가공감면은 별론으로 하고, 협정세율은 과세물품단위로 원산지결정기준 충족 및 원산지증명서를 발급 받아야 적용할 수 있으나,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물품이 아닌 가격에 대하여는 원산지결정 및 증명서 발급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 (2) 그렇다면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는가? 대안으로 원산지결정기준 중 누적기준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 사건의 경우 “어느 당사국 영역의 원산지 상품이 특혜관세대우를 받을 수 있는 최종재의 재료로 다른 당사국의 영역에서 사용된 경우, 그 최종재의 작업 또는 가공이 발생한 그 다른 당사국 영역의 원산지 상품으로 간주 된다”라는 누적기준을 적용하면 해외임가공물품은 체약당사국의 원산지 물품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를 적용하기 위하여 우선은 우리나라의 수출 물품(재료)이 최종재에 사용되었다는 것을 증명하여야 하는데 이는 임가공 수출물품의 원산지 증명서를 한국산으로 발급받아 수출물품이 체약 상대국의 최종재에 사용되었음을 증명함으로써 체약상대국의 원산지물품으로서 FTA 특혜관세를 적용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때 가장 주의하여야 할 점은 임가공 수출물품(재료)의 국내산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수입되는 제품을 계약상대국의 원산지 물품으로 인정 받을 수 없기에 누적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고 할 가능성이 있기에 국내산 원산지 발급 부분에 상당한 주의가 필요하다.⁹⁾

라. 가산세 문제

대법원은 가산세를 부과함에 있어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반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 그를 정당화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과할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2003.1.10. 선고 2001두7886 판결)

이 사례연구의 사건을 심리한 조세심판원 역시 “쟁점 원재료에 대한 원산지증명서는 없으나 청구법인 으로서는 쟁점원재료를 한국산으로 인식할 수도 있어

보이는 점, 당사국에서 쟁점물품에 대한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한 사실이 있는 점, 이후 쟁점물품에 대한 처분청의 원산지검증요청에 대하여 당사국에서 원산지 부합사실을 다시 확인하여 준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에게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이므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잘못이 있다”라고 판단하였다.

세법상 가산세란, 세법에서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납세협력의무를 위반하거나 불이행하는 경우 세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으로서 납세자에게 금전적 부담을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국세기본법 제2조). 그런데, FTA를 적용 받고자 하는 수입자는 FTA 협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어떠한 납세협력의무를 위반하거나 불이행을 한 적이 없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 사례연구 사건에서도 수입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서류를 구비하고 신고절차를 이행함으로써 납세자로서 협력을 할 수 있는 것은 모두 이행했다고 할 수 있으므로 가산세를 부과할 수는 없는 것이다. 최근 원산지 검증기관에서도 이렇게 판단하는 경우가 많은 것은 상당히 고무적인 경향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9) 해외임가공물품의 FTA 원산지 검증에서 가장 많이 발생되는 문제이다. 한국산이라는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 받지 않고 해외임가공 수출을 하다 보니 누적기준을 적용 받지 못하여 관세법에 의한 해외임가공 감면을 받을 수 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 그 가공임에 대하여 문제가 발생한다. 이 문제는 형식적 요건인 원산지증명서와 실제적 요건인 사실상 한국산이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에 “실질과세원칙”과 함께 논의될 수도 있을 것이다.

5. 결론

위에서 언급한 사례연구 사건은 원산지증명서라는 절차적인 문제에서 시작하였는 바, 통관단계에서 FTA 적용여부를 충분히 검토하였다면 문제 발생을 방지할 수있는 사건인데 이에 대한 검토가 미비하였다는 측면에서 아쉬운 사건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FTA적용에 있어서 형식적 요건과 실체적 요건 모두가 중요하겠지만, 최근 원산지 검증기관도 형식적 요건보다는 실체적 요건을 중심으로 접근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고려하면, 수출입업체가 우리나라 국가경제의 큰 축을 담당하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므로, 형식적 요건은 필수적인 것

중심으로 최소화하여 검증하고 실체적 요건 중심으로 FTA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정책적인 배려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실질과세원칙 적용). 또한 정책적인 제언으로 FTA를 체결 또는 FTA별 수정의제를 논의할 때 역외가공제도를 폭넓게 상호 양허하는 방안도 제안 해본다.

여하튼 통상적인 수출입물품과 달리 관세법, FTA법 등 여러법이 관련된 물품에 대하여 FTA 협정세율을 적용 받고자 할 때에는 적용품목, 적용국가, 원산지 결정기준, 원산지증명서, 가산세 등의 요건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 숙지하여 적절한 모든 요건을 갖추어 적용하는 것에 세심한 유의를 할 필요가 있다.



FTA TRADE REPORT

